하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757

발의년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방미숙 의원 (인)

1. 제정이유

○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 관의 업무지원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대행기관의 운영·사무처리 등(안 제3조)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남시협의회 업무지원 범위(안 제4조 ~ 제6조)
- 라.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7조)
-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 4.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9조, 제29조, 제31조
 -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조, 제30조, 제30조의2
-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7. 입법예고 결과
 - 가. 입법예고기간 : 2018년 10월 18일 ~ 10월 28일(10일간)
 - 나. 의견내용: "의견없음"
- 8. 기타 참고사항 : 덧붙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례제정 협조요청 및 조례 표준안(민주평통 사무처 발송)

하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 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하남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하남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하남시는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협의회 사무실을 우선적으로 시청 본관에 둘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한다.
- 제7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O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제9조(사무기구)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 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31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O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 제3조(대행기관 등) ① 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 ② 의장이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 2.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의 회의 소집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③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또는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또는 지역협의회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제30조(지역협의회) ①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의 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협의 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참고자료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주요내용	비고
전라북도 장수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수군협의회 지원조례	2016. 5.16.	 민주평통 자역협의회 기능 보조금 지원의 범위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협의회 위원에 대한 포상 	지자체 최초로 조례제정
충청남도 논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수군협의회 지원조례	2018. 1. 2.		
경기도 안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수군협의회 지원조례	2018. 4. 3.	장수군과 동일	
전라북도 구례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수군협의회 지원조례	2018. 8.20.	정무단과 중절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수군협의회 지원조례	2018. 9. 6.		
경상북도 안동시	민주평화통일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018. 9. 7.	·대행기관의 운영사무처리 ·지역협의회에 대한 지원 (예산, 인력, 시설 등) ·협의회 위원에 대한 포상	표준조례안에 따라 최초 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례 제정 협조요청 및 표준조례안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수신 수신자 참조

(22年)

제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지원에 대한 협조요청

-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1. 평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통일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헌법기관으로서 평화통일정책의 수 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대통령이 위촉한 국내의 19,710명의 자문위원이 무보수 명예적으로 헌신·봉사하고 개실니다.
- と な 평창 평화올림픽, 4.27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급진전과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민주평통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차에서는 귀 기관 내에 소재하고 있는 해당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의 자문위원 활동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청드리니, 최대한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협조 요청]

- 00 부의장, 협의회장 등의 의전, 예우 강화 <mark>지방자치단체의 지역회의·지역험의회에 대한 여산지원 확대 및 자부담(매칭)</mark>
- <mark>지역회의 · 지역협의회 행정인력 지원 요청</mark>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및 민주평통 지원조례 제정 요청

물임 민주평화동일자문회의 대행기관 협조 요청 1부

수신자 국내 대행기관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최장

	진화번호 (₹ 04605	시험 중앙	替玉朴	선기관
정화와 번영의 한번도	전화번호 02-2250-2235	서울특별시 중 천 (장충등27H)	중앙지역과-949		이우식
	概스번호 02-2236-27)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화용일자문회의 627H	(2018. 7. 10.)		중앙지역되장 안진용
	與△巴拉 02-2236-2764 /blue97@korea.kr	五	접수 총무과-14145		위원활동지원 국장 전난경
	/ 대국민 공	/ www.nuac.go.kr	(2018. 7. 10.)		사무취장
	공개		10.)		2018 7 10 황영성

불임2 민주평통 대행기관 받 조례안

OOAI(도/AI/군/구) 민주평화통일지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시/군/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 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시(도/시/군/구)를 말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 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시(도/시/군/구)혐의회(이하 "혐의회"라 한다) 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대해서는 혐의회 회장과 혐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혐의회 운영에 필 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NOO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혐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혐조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0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